

#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 징수조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7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4년 월 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조령산자연휴양림의 인터넷 예약시스템 운영에 따른 예약금 및 환불에 관한 사항과 시설사용료 현실화, 입장료 징수규정 삭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제명을 “충청북도자연휴양림운영조례”로 개정
- 쓰레기 수거비용 및 숙박시설 리모델링 등에 따른 시설사용료 일부 인상 징수 (안 제4조)
- 인터넷 예약시스템 운영에 따라 예약후 3일이내 시설사용료 전액을 지정계좌로 입금시 예약유효 (안 제6조)
- 예약취소에 따른 예약금의 위약금 처리 (안 제7조)
- 산림법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3조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조항 신설 (안 제11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##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충청북도자연휴양림운영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자연휴양림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어린이 :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 를 말한다.
2. 청소년 :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13세이상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.
3. 군인 :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(전투·의무경찰,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4. 시설사용료 :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

**제3조(시설사용료)** ①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.

**제4조(시설사용료 징수)** ①시설사용료는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사용예약을 받아 징수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현금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
2. 신용카드, 인터넷, 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 등

③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휴양림에 사용권 발매기를 설치한다.

**제5조(시설사용료의 면제)**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휴양림 업무와 관련된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2. 도지사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3. 휴양림과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4. 기타 도지사가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**제6조(예약금)** ① 휴양림내 숙박시설을 예약한 자의 사용료는 예약후 3일 이내(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은 제외)에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정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 할 수 있다.

**제7조(위약금 처리)** ① 휴양림시설 사용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거 예약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.

1. 사용일(check-in) 3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: 전액환불
2. 사용일(check-in) 2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: 총사용료의 10% 해당하는 금액
3. 사용일(check-in) 1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: 총사용료의 20% 해당하는 금액
4. 사용일(check-in)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: 총사용료의 30%에 해당하는 금액

② 제1항의 경우 환불에 필요한 송금수수료 등의 비용은 예약자의 부담으로 한다.

③ 시설물 사용예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

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휴양림 사정으로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 사용료를 환불한다.

**제8조(요금표의 게시)** 자연휴양림 내에는 별표의 시설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세입조치)** 자연휴양림의 수입은 충청북도 일반회계세입으로 한다.

**제10조(위탁관리)**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산림법 제32조제1항, 동법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**제11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## 시 설 사 용 요 금 표

(단위 : 원)

구 분		기 준	1일 요금	비 고
숲속의 집	5평형	1동/4인	30,000	
	6평형	1동/5인	40,000	
	7평형	1동/5인	40,000	
다가구숲속의집	7평형	1실/5인	40,000	
	8평형	1실/6인	50,000	
단체숙소	25평형	1동/1일	120,000	
오토캠프장		승용차1대 및 텐트1조	5,000	
야영장	데크없음	7~8인용	3,000	
사계절썰매장	일반		5,000	
	청소년·군인	1일/1인	4,000	
	어린이		3,000	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산림법

[일부개정 2003.12.31 법률 제07058호]

**第32條(休養林의 委託管理)** ①第31條제3項의 規定에 의하여 休養林造成計劃의 승인을 얻은 山林所有者는 休養林의 효율적인 造成 또는 管理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休養林의 造成을 위한 工事 또는 그 관리·운영에 관한 業務를 委託할 수 있다.

[개정 94.12.22]

**第33條(休養林의 入場料등)** ①休養林의 管理·運營者는 休養林에 入場하는 者로부터 入場料 또는 施設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.

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場料 또는 施設使用料의 徵收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.<改正1996.8.8>

[全文改正 1990.1.13]

### □ 소비자보호법

[일부개정 2004.1.20 법률 제07064호]

**第12條 (消費者被害의 救濟)**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消費者의 不滿 및 被害를 신속,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강구 하여야 한다.

②國家는 消費者와 事業者간의 紛爭의 원활한 解決을 위하여 大統領  
令이 정하는 一般的 消費者被害補償基準에 따라 品目別로 消費者被害補  
償基準을 制定할수 있다.

<改正 1995.12.29>

③第2項의 品目別 消費者被害補償基準은 紛爭當事者間에 補償方法에  
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消費者被害補償의 기준이 된다.

<新設 1995.12.29>